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제안경위

#### 1.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 출 자 : 정지권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1924호

다. 제출일자 : 2020. 10. 15.

라. 회부일자 : 2020. 10. 26.

#### 2. 서울특별시장 발의안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994호

다. 제출일자 : 2020. 10. 16.

라. 회부일자 : 2020. 10. 26.

## II. 제안사유

### 1.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에 의해 중요 사항을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나 보고 사항에 대한 통일된 사항이 불비하여 매번 요구자료 등에 의해 중복적으로 제출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에 효율화를 위하여 의회 보고사항을 일괄 정리하여 제시 하였음
- 임원추천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상임·비상임 이사를 선발하는 위원회로 상임·비상임 이사는 교통공사의 주요한 정책 등을 총괄 지휘하고 결심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그 책임은 교통공사 사장에 준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제정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변경시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에 사전 보고 하는게 타당할 것임

### 2. 서울특별시장 발의안

- 도시철도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투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1.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 의회에 대한 보고 사항 명시(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9조)

#### 2. 서울특별시장 발의안

- 서울교통공사의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자 예정액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자본금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현행 21조5,000억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 IV. 참고사항

#### 1.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29 ~ 2020. 11. 5

○ 제출의견 : 의견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수정가결

-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중복 제출 등 업무효율이 저해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다만, 개정조례안에 명시한 시의회 보고내용의 범위와 시기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명기가 필요하며, 개정취지에 반하여 공사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의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 한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인가 및 시의회 사전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공사 임원 임면의 공정성 저해 및 공기업인 공사의 자율경영을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시의회 보고범위와 시기가 명시되도록 수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개정 시 인가 및 의회 사전보고토록 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필요

## 2. 서울특별시장 발의안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입법예고('20. 7. 16.~ 8. 5.)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1. 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안

####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교통공사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안에 대해 시의회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공사 임원선정을 위해 운영되는 임원추천 위원회의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장의 인가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중요사안에 대한 시의회 보고 관련(안 제6조)

- 안 제6조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운영상 중요시 되는 예·결산, 안전운행계획, 주요철도사고 및 주요 시행 계획 등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을 통해 공사 주요사항에 대한 정기적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그간 필요시마다 시행하고 있는 자료요청 등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공사 주요 운영상황에 대한 투명성과 철도운영의 안전성을 일부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주요사항 범위와 보고시기가 모호하고 사안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의회에 보고할 주요사안 및 보고시기를 「지방공기업법」 및 현행 조례안에 명시된 업무로 정하고, 철도 사고와 같은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동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참고 : 시의회 보고 주요사항 및 관련법령

주요사항	관련법령	법령 내용
출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중장기 재무계획	지방공기업법 제64조3	①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투자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1항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규투자 사업 외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직변경	지방공기업법 제80조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정관변경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임원추천위원회 세부사항 변경시 시의회 보고 관련(안 제9조)

- 안 제9조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장은 인가 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sup>1)</sup>, 그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출범 이후 위원회 양성평등 강화, 후보자 자격 기준 완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총 4회 개정한 바 있음<sup>2)</sup>
-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임원을 선발하기 위한 위원회의 주요 변경

1)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개정 경과(서울교통공사 통합 이후)

	개정일자	개정사유	개정내용	비고
1	2017-09-18	오자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li> <li>- ③ ~ 미달하는 시에는 → 미달하는 때에는</li> </ul>	사규관리부서 일괄 개정
2	2018-12-31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강화 및 이해관계 임원 참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li> <li>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i> <li>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기관 임원 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 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li> </ul>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18.9.5.) 사항 반영 ※ 8항 및 9항 신설
3	2019-06-24	용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이사 → 노동자이사</li> <li>- 근로자 → 노동자</li> </ul>	심의생략
4	2020-07-01	임원(상임이사) 후보자 자격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이상의 보직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li> <li>→ ~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li> </ul>	-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공사 운영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선정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및 인사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현행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sup>3)</sup>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sup>4)</sup>,

위원회 운영 기간 중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할 경우 인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지방공기업인 공사 경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서울특별시장 발의안

###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sup>5)</sup>을 현재 21조 5,000억원에서

3)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8.9.5.)

4)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5) 국세청 용어사전, 수권자본 :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뜻 한다. (중략)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까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액을 수권자본금이라 하고 이 제도를 수권자본제도라고 한다. [참조조문]상법 289 ① 3호”

2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그 동안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현금 및 현물출자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운영을 지원해 왔으며<sup>6)</sup> 서울교통공사 통합 이후 수권자본금 조정은 처음이나 양공사 통합이전으로 살펴보면, 서울메트로가 1981년 이후 7차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94년 설립 이후 3차례 수권자본금을 상향조정한 바 있음

### ※ 참고 : 서울교통공사(통합 이전) 수권자본금 변경 내역<sup>7)</sup>

(단위 : 억원)

연도	'81	'82	'83	'92	'97	'00	'04	'10	'17
서울메트로	500	3,800	15,000	24,000	30,000	45,000	75,000	95,000	215,000 (양공사 통합합산)
	설립	1~4호선 현물출자 운영지원 등			건설 부채 상환, 사업 출자 등		3호선 양양안주		
연도	'94		'98		'02		'06		
서울도시철도공사	30,000		40,000		90,000		120,000		
	설립	건설부채 상환 등		6,7호선 현물출자 등		건설 부채 상환 등			

- 2020년 현재 서울교통공사 납입자본금 규모는 21조 340억원으로 수권자본금 한계에 97.8%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sup>8)</sup>, 2021년도 이후에도 노후시설 재투자, 공기질 관리 등에 출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재

6) 2010년~2019년 서울교통공사 납입자본금 현황 : [별첨1]

7) 검토보고서,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04호, 2010.3.1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918호, 2006.2.3.)

8)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도시철도과-7612, 2020.6.30.)

수권자본금(자본금 한도 (A))	'20년 말 납입자본금 (B)	잔여 한도(출자 가능액) (A-B)
251,000억원	210,340억원	4,660억원

정지원을 위해 수권자본금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19년 '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이관계획'에 따라 '19.7~ '26년 만기도래 도시철도공채 상환 채무가 서울시로 이관되었으며<sup>9)</sup> 공사 채무와 관련된 별도의 출자금을 편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공채 이관을 부채감소 및 자본금 증액으로 회계처리한 이후 자본금 증액은 출자금 증액으로 간주하여 공사의 “2020년 이후 출자계획”에 반영하였음

※ 참고 : 2020년 이후 공사 출자계획<sup>10)</sup>

(단위 : 억원)

구분	계	'21	'22	'23	'24	'25	'26	'27
계	<b>35,270</b>	7,153	5,799	7,681	4,651	7,221	2,607	158
노후시설 재투자	5,571	1,527	1,949	2,095	-	-	-	-
공기질 관리	3,920	1,751	2,169	-	-	-	-	-
노후전동차 교체	6,671	323	598	1,440	1,172	1,717	1,263	158
<b>공사 채무 이관</b>	<b>19,108</b>	3,552	1,083	4,146	3,479	5,504	1,344	-

- 다만, 공사 채무 이관에 따른 출자금 증액은 2021년도 예산편성 출자 동의안<sup>11)</sup>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회계상 자본금 증액인 공사 채무 이관을 공사 출자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9) 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 계획(도시철도과-4591.2019.4.30)

- '19.7 ~ '26년 도시철도공채 상환채무를 공사에서 시로 연도별·순차적 이관 후 상환
- 서울교통공사 부채비율 감소로 공사 재정건전성 강화 및 공사채 발행여력이 확보되어 노후시설 적기 교체를 통한 지하철 안전운행 보장

10)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도시철도과-7612, 2020.6.30.))

※ 공사 출자 계획은 사업 추진 일정, 시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11)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1772, 2020.8.12.)

- 출자금 : 427,632,593천원 \* 예산 편성과정에서 금액 변경 가능

- 세부내용 : [별첨2 참조]

##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수권자본금 증액이 사업을 위한 자본금 확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채감소 후 공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sup>12)</sup> 과도한 공사채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서울교통공사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19년 도시철도공채 이관을 통해 공채는 감소하고 자본금은 늘었으나, 공사채와 CP(기업어음)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공채를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와 자본잠식률이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 참고 : 서울교통공사 재정현황<sup>13)</sup>

(단위 : 억원)

연도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자본)	자본금	자본잠식율※
'16	123,390	43,430	79,960	54.3%	193,767	58.7%
'17	131,342	46,046	85,296	54.0%	195,269	56.3%
'18	132,424	<b>51,201</b>	<b>81,223</b>	63.0%	196,592	<b>58.7%</b>
'19	131,990	<b>46,455</b>	<b>85,535</b>	54.3%	206,769	<b>58.6%</b>
'20	133,820	<b>52,256</b>	<b>81,564</b>	64.1%	209,878	<b>61.1%</b>

\* 자본잠식율 :  $(1 - (\text{자본}/\text{자본금})) \times 100$

특히, 서울시의회는 그간 서울교통공사의 과도한 부채가 자본잠식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을 감안할 때,<sup>14)</sup>

12)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행정안전부)

○ 법령상 발행한도(시행령 제62조제2항)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순자산액의 4배 이내 - 기타사업 : 순자산액의 2배 이내

○ 순자산액 : 승인신청일 기준,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을 의미

1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 보도자료, “서울교통공사, 경영개선 의지가 아쉽다”, 성중기 의원, 2020.11.13.

서울시는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보다 신중한 재정관리를 요구해야 할 것임

-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임 및 부대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으로 현물출자로 수권자본금을 늘어난 것은 공사 자체 경영실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일례로, 2017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수입급감에 따른 자본감소 등의 문제가 직면함에 따라 출자지원 및 공사채 발행 한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와 부실경영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음을 감안할 때<sup>15)</sup>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사례들을 거울삼아 공사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서울시 출자금 확보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자구책 마련도 함께 힘써야 할 것임

---

보도자료, “서울교통공사‘20년 부족자금 9,741억...특단의 자금유동성 관리대책 필요”, 정진철 의원, 2020.6.22  
보도자료, “서울시지하철 양공사, 재정운영 빨간불?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구조, 빚내서 빚갚는 악순환 타계 필요”, 신원철 의원, 2016.9.7

1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 8331                      - 회의결과 : 부결
- 제안일자 : 2017. 8. 2                - 의결일자 : 2017. 12. 29
- 주요내용 : 사의 경영상황이 일순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적기라는 점에서 볼 때, 정부출자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여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별첨 1 2010년~2019년 서울교통공사 납입자본금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전년도말	납입자본금			당년도말	주요 내역
		계	현금	현물		
<b>계</b>		<b>28,394</b>	<b>23,763</b>	<b>4,631</b>		
2010년	178,357	3,753	1,628	2,125	182,110	3호선 연장 인수, 부채 상환
2011년	182,110	1,146	1,146		183,256	부채 상환, 시책 사업
2012년	183,256	1,115	1,115		184,371	부채 상환, 노후시설 개량
2013년	184,371	887	887		185,258	부채 상환, 노후시설 개량
2014년	185,258	4,070	4,070		189,328	부채 상환, 노후시설 개량
2015년	189,328	943	943		190,271	부채 상환, 노후시설 개량
2016년	190,271	3,478	972	2,506	193,749	사당부지 출자, 노후시설 개량
2017년	193,749	1,502	1,502		195,251	노후시설 개량
2018년	195,251	1,323	1,323		196,574	노후시설 개량
2019년	196,574	10,177	10,177		206,751	공채 채무이관, 노후시설 개량
2020년	206,751	3,589	3,589		210,340	노후시설 개량

## 별첨2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예산

가. 출자금 : 427,632,593천원 \* 예산 편성과정에서 금액 변경 가능

나. 산출세부내역

- 도시철도과(11건) : 424,662,593천원
- 택시물류과(3건) : 2,97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예산(안)	산출근거
출자금 총계		427,632,593	
도 시 철 도 과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98,595,000	- 노후전선로 등 37개 시설 개선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8,500,000	- 노후 전기시설 등 24개 사업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3,830,000	- 한양대~뚝섬 구간 0.4km 교체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300,000	- 13개역 화장실 개선 실시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5,450,000	- 4호선 210칸 제작 및 납품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09,373,093	- 양방향 전기 집진기, 살수배관 등 설치
	1호선 역사(청량리역·제기동역·종로3가역·종각역·서울역) 리모델링	34,807,000	- 1호선 5개역 잔여사업비 편성
	4호선 역사(쌍문역·서울역·한성대입구역) 환경개선	78,687,500	- 서울역, 한성대입구역의 냉방 등 환경개선 공사 시행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30,403,000	- 연차별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 시공 및 시스템 구축 시행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2,021,000	- 6번 출입구 확장
	자전거 경사로 및 역이용 안내도 설치	1,696,000	
택 시 물 류 과	도봉 도시철도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1,170,000	- 총 사업비 39억원 중 국 비 30%(11.7억), 지방비 30%(11.7억), 교통공사 40%(15.6억)
	학여울역 공동물류센터 조성	600,000	-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 비 30%(6억), 지방비 30%(6억), 교통공사 40%(8억)
	생활물류지원센터(환승지하철역) 조성 (30개역)	1,200,000	- 총 사업비 24억원 중 지방비 50%(12억), 교통공사 50%(12억)